

우리나라 医務記錄의 기능과 개선방향



李 東 宇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의무기록은 각급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진료 행위에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일컫는 통상적인 명칭이다.

병의원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병원급에서 작성하는 의무기록은 병원의무기록 (Hospital Medical Record)이라고 부르고 의원급 기관에서 작성되는 의무기록은 의원의무기록 (Clinical Medical Record)이라고 부른다.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대상자는 환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급 의료기관에 원하는 환자와 정상인을 포함하며, 진료행위는 단순한 환자의 치료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의 건강 확인의료행위까지 뜻하는 것이다.

의무기록의 작성자는 환자의 진료행위에 참여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원, 조사원,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진료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인과 진료행위에 관련되는 지원행위자 또는 간접 지원자이다.

한국에 있어서 의무기록의 작성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의무기록의 작성과 보관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고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는 적어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1982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종합병원 또는 80병상 이상의 병원에서는 의무기록부서를 반드시 두어 의무기록의 보전과 관리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의무기록의 역사는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고대 문명사회에 이미 개인의 치료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대 문명사회에 있어서의 의무기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의무기록이 갖는 중요성과 필연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맥락에서 비롯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의료기관에 있어서 의무기록이 갖는 기능은 중요하다. 의무기록의 기능을 검토해 보고, 이 기능의 중요성을 충족할 수 있는 의무기록의 작성과 관리의 문제점을 익히해 보는 것은 의무기록 발전에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의무기록은 중요한 기능면에서 볼 때 다음의 몇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다.

1. 환자진료행위에 관련된 사실적, 시계열적 진료행위에 의한 병력(病歷)을 이해하는 기초자료의 근거제시이다.
2. 환자진료 행위에 관련된 의료인간의 의사전달, 참고, 협의의 도구이다.
3. 환자진료의 앞으로의 계획수립, 수정 및 보관의 기초근거 자료이다.
4. 환자진료 행위의 적정진료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이다.
5. 환자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산정의 기본 근거자료이다.
6. 환자의 진료행위에 따른 법적 송사가 발생하였을 때에 의료기관, 의료인의 사실 증거 제시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근거 서류이다.
7. 의학교육 또는 훈련에 필요한 실용적 교육자료이다.
8. 질병력 특히 발생률이 낮은 질환의 연구 자료이다.
9. 의료기관의 임상 수련의 수련기간에 대한 자격 평가에 필요한 근거 서류이다.
10. 의료기관의 운용, 조직, 관리, 행정, 효율, 효과 판정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생산의 기초 서류이다.
11. 의료기관 이용환자의 의무기록 조사는 한 국가의 질병력 수준과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질병력 조사 자료이다.
12.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사인(死因)을 제공하는 기초자료이다.
13. 의무기록의 적정정보관리는 국가의 의료 및 보건행정의 계획, 행정 및 수행의 기초자

료를 제공한다.

14. 의무기록의 장기 보존은 한인구의 질병력, 사망력 및 치료형태의 역사적 변천 과정의 자료를 제공한다.

의무기록의 이러한 기능은 의무기록의 고유 기능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이용 면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

첫째는 개인적 차원의 이용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은 환자 또는 의료인 개인으로서의 진료 또는 기타 관련된 사항의 이해와 이용, 필요한 사항의 보호를 제공하게 하는 역할이다.

둘째 역할은 의료기관 단위 차원의 이용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은 의료기관의 창구행정으로부터 경영, 기획차원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이 필요한 수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셋째 역할은 국가단위 차원의 이용을 제공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은 국가의 질병력, 특히 사인 등의 기본적 분포와 구조의 변동 양상을 이해하게 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이고, 따라서 국가의 보건 의료정책 수립과 수행에 중요한 수량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의무기록은 이렇듯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작성되어 보관하는 제반 의무기록은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는가는 한번쯤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의무기록의 여러 기능 중 어떤 기능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의무기록의 기능과 역할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설정할 연구 보고는 현재 참고할만한 문헌이 별로 없다. 의무기록은 작성자가 의료인이고, 관리자는 의무기록인이며, 이용자는 환자, 진료의사, 경영관리자, 국가이므로 작성차원, 관리차원 및 이용차원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의무기록이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한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

1. 의무기록의 표준화 설정

한국에 있어서 현재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보관해야 할 최소한의 작성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항목의 기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의무기록의 표준화는 의무기록에 사용되는 술어의 정의, 양식의 통일성, 작성내용의 순서, 전개형식, 내용량, 또는 의무기록의 크기, 관리, 제표 등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구체적인 표준기준을 설정하는 것의 요구이다. 표준화한 후의 이들은 의무기록작성자의 교육과 작성의 편이성, 의무기록 관리의 전산화의 편의성, 의무기록 이용자의 통일된 기준에 따른 이해의 용이성이다. 이미 유럽, 특히 영국 등에 있어서는 1960년대 초에 보건성에서 의무기록 표준화를 설정하여 작성기준, 내용 뿐만아니라 작성용지의 지침, 색상, 보관, 처리, 이용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2. 의무기록 작성의 정확성 제고

의무기록작성의 내용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타당성이 결여된 기록은 뜻이 없으므로 의무기록의 기능을 이행할 수가 없다. 의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의학교육에 의무기록의 작성과 이용을 교육과정의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무기록위원회 등을 두어 의무기록작성의 교육, 관리,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확성 제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3. 의무기록관리 개선

의무기록의 관리는 의무기록 전문가가 관장하는 사항이다. 현재 한국에 있어서는 국가의 자격시험을 거쳐서 의무기록사의 면허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

의무기록관리개선을 위하여는 의료기관에서 병상 수와 이용환자 수에 적절한 크기의 의무기록전문인을 두어 의무기록의 분류, 보관, 의무기록 활용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를 확립하

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에 각 급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의 보관이 문제되어 일부 기관에서 사진촬영에 의한 필립보관 등으로 개선하고, 또한 전산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4. 의무기록의 신속 처리

의무기록의 수량적 정보를 일시 다량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는 의무기록으로 부터 의료기관 또는 그 이상의 이용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현재에는 대체로 의무기록실에서 작성되는 질병(또는 사인), 국제질병분류부호 정도 또는 환자의 특성에 관련된 일부 통계가 월(月) 또는 주(週) 단위로 작성되는 의료기관이 있으나 그 이상의 정보처리를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산화작업이 활발해지면 의무기록처리는 어느정도 정보제공의 중앙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의무기록실의 시설 개선

의무기록실의 시설개선과 적절한 기자재의 보충, 의무기록 보관장소의 확충이 없이는 의무기록을 충분히 보관 활용할 수가 없다. 최근에 많은 의료기관에서 공간확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에 있어서 의무기록의 발전을 위하여는 보건사회부 뿐만아니라 의학협회 병원협회 등에서 의무기록 기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연구, 제도개선, 지원, 협력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MINISTRY OF HEALTH THE Standardization of Hospital Medical Records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Condens, 1965
- Huffman, EK: Medical Record Management, Northuesterm University, 1972
- 홍준연: 의무기록관리학, 대한의무기록협회, 1984
-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Medical Record Card, Britain, 1959